



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자문회사인 Manchester Trad社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本會國際部(TEL : 553-0941/7)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EC 경쟁정책

대규모 M&A(흡수통합)을 통제하는 EC 규정이 1990년 9월 21일부로 발효됨. 이에 앞서 집행위는 동규정하에 효력을 갖게되는 흡수통합의 조사와 발표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설정한 "Regulation"을 발표했다.

흡수통합을 발표하는 당사자는 규정 서류 양식에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는데 업체가 작성해야 하는 이 정보분량은 업체에 추가부담이 될 것이다.

2. Electronic Motor 덤핑관세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는 동유럽 산 Multi-phas Electric Motor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의 부당함을 주장한 EC 수입업자들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러한 재판으로부터 반덤핑 관세 취하판정을 받기는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한 매우 어려운 것이 통례이다.

3. 반덤핑 절차 종료

집행위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등지로부터 수입되는 세탁기용 "Two-speed Motor와 관련해 1989년 11월 개시한 반덤핑 조사를 종료했다.

집행위는 역내 업체들의 시장점유율과 가동

율 등에서 피해 협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4. 日產 1회용 라이터 덤픽조사

집행위는 한국, 중국, 대만산 라이터와 같이 CD Code(9613. 1000)인 일본산 일회용 Gas라이터에 대해 덤픽 조사 개시했다.

5. EC, US 협력

EC 집행위는 미국 정부와 미·EC간 전자부문 연구(Electronics Research)에 협조를 넓혀나갈 회담에 시작해 왔다.

양국은 그들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키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 여기며 상대국 정부간에 후원이 된 전자부문 프로그램에 양국 기업들의 참여를 넓히는 결과를 기대했다.

6. EC 반도체 전략

EC 집행위와 이사회(Council) 간에 EC 반도체 전략에 관한 협의를 준비중에 있다.

비록 집행위가 관세, 덤픽관세, 원산지 규정, R&D 및 반도체 설계 보호법 등의 분야에 있어 규정설정 역할을 해 오고 있으나 EC는 여전히 전반적인 정책이 미진한 상태이다.

이 분야에 있어 어려움은 EC 산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사용자와 반도체 설

계 및 생산부문간의 전략적 중요성을 조정하는 것이다.

7. ECIF, 현행 반도체 관세율 지지

EC의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ECIF (Electronic Components Industry Federation)는 반도체 수입업자와 사용자들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14%의 관세를 삭제하도록 로비를 하고 있는데 대해 현행 관세유지는 지난 수년간 일본의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며 또한 최종 판매가에 대한 관세의 영향은 극히 미미한 점 등을 들어 자국 산업 보호를 옹호.

8. 가전제품에 대한 반덤핑 정책 고수

EC 집행위 대외 담당 Mr. Andriessen은 유럽 의회에 의한 네덜란드 회원이 제출한 질의에 답하여 EC 반덤핑 정책을 고수. 가전제품에 대한 덤핑조사와 관련, 안드리센은 EC의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이익에 관점이 주어져야 하며 소비자 단체들 또한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가전제품에 대한 국제교역이 최근 급격히 증가했음을 들어 이를 제품에 대해 덤핑조사가 기형적으로 증가했었다는 지적을 부인 했으며, 가전제품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가 현행 5년보다 짧아져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거절 했다.

9. GATT, 반덤핑 코드 2차 개정안

GATT의 Duputy Director-General은 협상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일환으로 수정된 반덤핑 코드에 대한 2차 개정안을 심의했음. 1차 개정안은 이견 조정을 위한 과도한 의욕을 보인 것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이번 2차 개정안은 좀더 모호한 것으로 보이

며 폭넓은 타협안이 제시된 것으로 여겨진다.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해결안을 피한 대신 가능한 대안들을 열거해 놓았다. 거의 모든 대표들이 동 협정 내용에 대한 협상 개시 용의를 표명했으나 아직도 재덤핑을 규제하는 미국의 제안같은 주제에 대해 많은 이견이 남아 있다.

10. EC, 반도체 관세인하

미국 전자산업은 우르파이 라운드 협상에서 EC의 반도체 수입관세(현행 14%)를 낮추도록 압력. 이에 대해 EC는 이미 동 관세를 30% 낮출 것임을 제안했으나, 미국은(동관세가 없음) 향후 3년간에 EC관세의 완전 철회를 요구함.

현재 EC의 높은 관세는 EC의 반도체 원산지 규정과 함께 EC내 현지 투자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산업은 미국제품에 대한 유럽 바이어 관세비용이 7억불정도이며 이로서 마케팅과 소비자 피해가 있음을 주장했다.

11. 소프트웨어에 관한 EC Directive에 반대

“CUE”(the computer users of Europe association)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EC 지침 초안에 반대했다.

동 지침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문제와 제작자의 사전 동의없이 “Reverse Engineering”을 금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CUE”는 현행 형태에서의 동 지침은 상호 Data Processing 개발을 저해하며, 컴퓨터 사용자에 대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여기고 있음. 또한 “CUE”는 유럽 컴퓨터 생산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IBM이나 Digital 등 대형 메이커들이 생산하는 제품들과의 시스템 호환으로 할 수 있는 “Reverse Engineering”을 원하고 있다.

12. EC, 반도체 통합정책

EC 집행위는 반도체에 관해 총괄적인 정책 수립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달 이후 논의될 협의회(Draft Communication)를 준비하고 있다.

동 협의회는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 및 제작자 및 사용자간 긴밀한 관계, EC 생산자들의 경쟁적 접근의 필요성 등에 초점을 둘 것이며 시기 또한 필립스의 JESSI 연구계획 탈퇴와 CL의 후지쓰 합병 등 유럽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13. 필립스

1990년도 경영부진의 예상하에 필립스는 전자부품 분야의 약 4,000여명의 감원을 발표, 이는 S-RAM 개발 및 JESSI의 컴퓨터 메모리 계획 참여 등의 포기를 나타내며, 이밖에 영향을 받게될 제품으로는 LCD와 컴퓨터용 모니터, Image Sensor 그리고 Semiconductor Laser 부문 등으로 예상됨. 이러한 필립스의 개편은 가전부문에 전사력을 집중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14. EC R&D Project에 미국 참여 가능성.

필립스의 JESSI 계획 탈퇴로 미국 및 일본의 업체들이 EC의 R&D Programmes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IBM은 동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강력히 로비를 추진해 왔다.

15. 한국산 DRAM 제소

'90. 9. 18 한국산 DRAM에 관한 EC 반덤핑 자문위가 개최됨. 아일랜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행위는 한국산 DRAM에 대한 제소를 승인하며 향후 수주일내에 조사를 개시키로 결정.

16. 일·EC간 반도체 협정

EC 집행위는 일본산 EPROM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1987. 4 개시) 된다.

일본 수출업자들은 DRAM 경우와 같이 아주 낮은 최저가격의 Price Undertaking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DRAM의 가격협정의 경우 유럽의 수요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초래했었음. 이에 반해 이번 EPROM의 경우 EC 수요자들이 동 가격협정에 영향을 덜 받게되는데 이는 일본 외에 다른 공급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협정 가격은 현재 시장가격 이하의 수준에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에 대한 즉각적 영향은 없을 것이다.

유럽 전자부품제조자협회(EECA)는 미국산 EPROM의 수출가격도 감시중임을 밝히며, 동 Price Undertaking 수락이 기타 수출업자들이 협정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토록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17. 공공조달 Market

최근 부뤼셀에서 공공조달에 대한 EC 회원국들의 자국 시장을 더욱 개방토록 하는 새 규정이 채택됨으로서 EC 전체로서 연간 약 20bil. EUC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1993년부터 에너지, 수송, 통신, 상수 등 주요부문에서 이제까지 공공조달에 관한 EC 규정에서 제외되어온 EC의 공공재 구매자들은 EC 내 공급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만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제3국들은 "Buy Europe" Clause (제3국 입찰가의 3%이내에서는 유럽 입찰가를 우선함) 포함에 대해 우려를 표명, 이들 비 유럽 입찰자들은 EC Content (EC 부품사용)의 일정율이 요구되어질 것이다.

동규정은 작업계약(Works Contract)=ECU

5백만, 조달계약=ECU 40만 이상에 적용된다.

18. 우루과이 라운드

4년전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에 농업, 서비스, 섬유 그리고 지적 소유권 등에서 여전히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라운드 종료를 위한 각국 통상장관들의 브뤼셀 회담 예정일인 12월 첫째주까지, 진행중인 15개 분과별 의제의 타결 가능성 또한 의문시 되고 있다.

얼마전 캐나다, 유럽, 일본 및 미국의 화학산업들은 협상을 위한 일반목표를 설정했으며, 시장개방과 무역규정 개선을 위해 반덤핑 Code, 산업보조금, GATT 세이프 가드 규정 등에 대해 GATT의 분쟁해결 System의 역할이 요청되어졌다.

또한 이들은 물량 자율규제 협정 같은 혼존하는 “Grey Area” 관행이 밝혀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계획하에 단계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19. 필립스, AT&T와 통신부문 협력 포기

필립스는 7년간 지지해온 AT&T와의 통신장비 부문에서의 합작관계를 청산할 것임을 발표했다.

20. 스웨덴, 반덤핑 제소에서 미국에 승소

스웨덴 정부의 제소에 따라 GATT 분쟁 위원회(Disputes Panel)는 미구이 “Seamless Stainless Steel” 제품에 대해 부과해 온 반덤핑관세를 철회하고 지불되었던 관세를 반납하도록 결정했다.

Panel은 미국이 덤프 조사 개시에 있어서 피해를 받게 되는 자국 국내 산업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 절차상의 요구사항을 침해했음을 지적했다.

동결정은 미국의 관계당국이 GATT Code에

입각한 법안상의 요구조항을 충분히 이행치 않고 조사를 개시했을 수 있는 여타 Case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21. GATT 가입

볼리비아, 튜니지아, 베네수엘라 등이 GATT 가입절차를 마무리지었으며, 코스타리카 역시 수주일내에 이들 국가들과 함께 GATT 계약 당사국이 될 것이다.

반면 중국의 신청은 내년까지 연기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대외무역에 있어 좀더 시장을 개방을 해야 하며 관세율을 낮춰야 하다는 결정때문이다.

22. 미·멕시코 자유무역협상 시작

지난 9월 25일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공식 통보함으로서, 미·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는 60일 협상 심의기간을 갖게 된다. 이 기간동안 양 위원회에서 기각되지 않으면, 공식 협상은 시작되며, 미 행정부는 본격적인 협상이 '91년 봄에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도 본 협상에 참여할 뜻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캐나다의 참여조건은 1991년 1월 31일 전까지 구체화될 것이다.

미·멕시코 FTA가 현실화 되기까지는 미국의 입법과정에서 아래의 세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와 상원 재무 위원회의 동의

- 새로운 의회에서 상·하원 Rul 변경

- 행정부의 “신속승인” 권한의 '91. 6. 1까지의 연장

캐나다와의 FTA에서, 상원 재무위는 10 : 10의 표결로 FTA의 “신속승인” 고려를 거의 기각하였다. (이 표결이 “부승인” 요건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표결은 본질적으로 캐나다와의 협상을 반대한다기 보다는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불만을 두루 나타낸 것이다.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는 협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았으나, 미국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의회가 UR 결과와 다른 사안에 불만을 가지면,對멕시코 협상이 난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부는 또한 “신속승인” 협상 권한의 연장을 요청할 것이다. 이는 어떠한 변경없이 특정 기한 내에 의회 심의를 위하여 협상안의 제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의 권한은 '91년 6월 1일에 종료시한이 UR타결의 촉진역할을 하기 때문에 UR종료전에 협상 권한의 연장요청을 거리게 될 것이다.

(1) 미국의 주요협상 목표

- 멕시코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추가적 철폐 또는 감축 특히 곡물, 낙농, 과일, 채소류, 목재 및 목재품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한 수입 허가
- 국가 투자법의 개정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의 자율화 확대, 부동산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석유와 금융서비스 산업부문의 외국인 소유 금지의 개선.
- 은행, 증권, 보험, 운송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의 추가 개방.
- 멕시코의 특히, 축작권법의 보호 약속 이행 위한 구체적 조치

멕시코의 미국 상공회의소는 향후 5년간 멕시코의 수입은 50%까지 증가하며 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벽 축소) 간접적 효과보다는 영향을 덜 받을지 모른다.

멕시코는 이미 임금과 환율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고 많은 멕시코 제품들은 면세대상이며 GSP 혜택이나 마퀴라도라 생산에 따라 낮은 관세를 물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산업전망, 수출 위한 생산과 마케팅, 기술능력, 노동력면에서 한국에 뒤지고 있다.

마퀴라도라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이 격리된 상태로 멕시코 경제와 산업시설과는 통합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FTA가 기대하였듯이 많은 외국인 투자와 기술을 끌어들인다면 미국 시장에서의 주요 경쟁력 잇점을 유지하면서 한국을 따라잡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FTA 협상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UR과 함께, 미·멕 FTA는 향후 2년간 통상분야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 긍정적이고도 부정적인 양면 효과를 줄 것이다.

한편으로, 저임금 경쟁, 환율, 불공정 무역 등에 관한 관심은 극동에서 멕시코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 FTA는 한국과 기타 극동의 수출국들이 멕시코를 면세에 외한 미국 진출의 교도보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멕시코를 통하여 들어오는 한국·일본·캐나다·싱가포르 CPT에 대한 우회 덤핑 조사에서 잘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멕시코의 수출에서 제3국 부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의 채택을 선호할 것이다.

멕시코에서의 극동 국가의 생산은 특히 세밀하게 검토될 것이다. 이 경우 멕시코와 미국산 부품을 높은 비율로 쓸 경우와 제품을 멕시코 시장과 다른 수출시장에서만 팔고 미국에서 판

매치 않을 경우 덜 부정적으로 보일 것이며 미국산업에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FTA하의 원산지 규정 협상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는 FTA에 해당하는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한국산이 얼마정도인가를 결정할 것이다(완화된 원산지 규정은 더욱 많은 한국산을 허용함.)

미국산업계는 원산지 규정을 더욱 규제적으로 제정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 회사들은 보다 개방적인 규정의 잇점을 대하여 멕시코 정부와 신중하게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의 다변화를 추구하며 국동지역에서 더욱 많은 투자를 고무하는 규정의 채택을 원할 것이며 전자제품 생산의 경우, 한국산과 기타3국의 부품을 사용하여 멕시코내에서 조립 생산하는 미국 회사들은 그러한 입장 을 지지할 것이다.

23. ITC, 반도체 제조 및 시험장비, 통신 기술과 장비의 연구를 위한 첨단산업 업종 선정

상원 재무위의 요청에 따라, ITC는 최근 정보의 개발과 유지를 요하는 첨단 기술제조산업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ITC는 또한 반도체 제조 및 시험장비, 통신 기술과 장비, 의료기 등을 포함한 전반적으로 1년이나 소요되는 연구대상 업종을 발표하였다.

ITC가 정보수집을 시작할 기술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 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 약품
- 반도체 제조장비 포함한 기계공구
- 컴퓨터, 소프트웨어, 주변기기
- 통신기기
- 반도체 포함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부품
- 차량 및 부품
- 항공기 및 부품

- 미사일, 우주선 및 부품
- Fiber Optic 포함한 과학기기
- 심층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세개의 산업은 다음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고 ITC는 밝혔다.
- 경쟁력 제고와 기술발전 위해 시장기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 정부계획에 의하여 국내 및 외국의 생산자가 영향을 받는 산업
- 기술유출과 외관으로 인한 전략적 중요성
- 심층연구의 목적은 국제시장기능, 외국과의 경쟁,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미국 정부 정책을 포함한 구조와 산업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24. 미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발표 임박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으로 불공정한 잇점을 얻고 있는 국가를 규명하는 반기 보고서가 완료되었으나 정책차원에서 아직 검토되고 있다.

재무부 관리는 단언할 수 없으나 10월말이나 다음초에 이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지난번 보고서에는 한국이 환율의 불공정 조작국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25.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진전 현황

(1) 미국내 정치적 논란 가열

10.23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시행법안의 인준을 위하여 신속승인절차 존속시키려는 상원 결의안이 시작되었다.

본 결의안은 켄트 콘라드와 어니스트 홀링즈 상원의원에 의해 상정되었으며, 섬유, 철강, 농업부문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32명이 본안을 지지하였다.

콘라드 상원의원은 상원 농업위원회의 주요 위원이며, 그의 본 결의안에 대한 지지는 미국 생산자들의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홀링스 상원의원은 상업과학운송위원회의 의장이며 섬유산업부문의 주요인사이다.

본 결의안 혹은 이와 유사한 법안이 차기 의회 회기에서 입법화될 가능성은 여러 업계대표들이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결과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농업부문이 관건이 되고 있으며 미국 농업생산자들이 우루파이 라운드협상 결과에 불만을 품는다면 전통적으로 무역 자유화를 반대해온 단체(섬유, 신발, 철강 그리고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같은 노동조합과 수입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와 동맹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서비스산업은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불만을 품는다면 운송(해운 및 항공 서비스 포함), 통신 및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동맹에 또한 가담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환경과 소비자 그룹들은 GATT에서 논의된 공중위생 및 식물위생규정은 살충제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입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무색케 할 것이라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콘라드의 본 결의안이 이번 회기에 입법화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의회 견해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충분히 만족하지 않는다면, 의회의 UR 협정 시행 법안 인준은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미 행정부는 이와 같은 본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여러 그룹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은 농업부문에서 의미있는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섬유와 덤피ング과 같은 미국 산업에 타격을 줄 기타 부문에서 양보할 필요성은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GATT에 대한 입장은 특별 이해 관계자들의 견해를 반영시키기 위해 수정되어 왔으며 현재도 수정되고 있는데 이는 여러 부문에서 완화된 내용이 될 것이며 미국의 불공정 무역법에는 어떠한 변경도 없을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는 시장 개방부문인데 여기서 미국은 UR협상에서 미국제조업자의 희망사항이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에 특히 유념하고 있다.

(2) 한국 전자산업에 영향을 주는 각 협상그룹의 협상진전현황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협상그룹의 최종안 제출시한은 11월 12일이다. 한국 전자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협상은 시장접근, 덤피ング, 단기 소유권 보호, 보조금 코드,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상이다.

협상 진전상황으로 볼 때,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는 단적소유권과 시장접근 등 두가지 뿐이다.

다음은 특정부문 협상에서의 미국의 최근 입장이다.

1. 시장접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는 부문이 시장접근 분야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관세그룹의 33% 인하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Caterpillar사가 이끄는 미국의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들은, 기타국들이 똑같이 관세율 인하에 동의한다면 UR 협상 참여국들이 몇몇 분야에서 관세를 철폐시킬 수 있다는 제로-제로안을 지지해 왔다.

본 제안은 비판을 받아 왔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를 강조한 반면 기타국들에게 중요하고도 민감한 부문에는 매우 낮은 관세율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10월 24일 미국은 어느 산업에도 관세율을 평균 43%까지 인하시키자는 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USTR은 지금까지 교역 대상국들이 제출한 안을 기준으로 협상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으로 경쟁력 있는 미국의 수출업체들은 다만 관세의 급격한 인하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감한 제품에 대한 관세 양허는 우루파이 라운드를 반대한 미국내 산업

동맹의 결속을 강화시킬 것이다.

미국과 기타 선진국들이 관세 Offer에 대해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은 소위 제로-제로옵션이다.

미국과 기타국들은 그들이 경쟁력있는 부문을 선정하고 해당 부문의 제품에 대한 모든 관세부과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미국의 실질적인 제안은 비밀로 취급되고 있으나 많은 전자제품이 제로-제로옵션에 해당될 것으로 본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관세인하를 요청받고 있을 것이다.

시장 접근협상은 특히 덤피ング과 같이 기타 분야에서 협상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아 한국 전자제조업체에 아마 가장 중요한 부문이 될 것이다.

MFN 관세인하는 GSP수혜국과 특혜 혹은 쌍무 무관세 협정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제조업 부문의 지지를 고무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행정부를 포함하여 다자간 협상 지지자들은 현재 모든 관심이 서비스, 단적 소유권, 외국인 투자 등 새로운 분야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얻어지는 실질적인 시장 접근의 잇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 산업의 평균이 낙관적인 수출 증가 기회보다는 수입기회 확대에 의해 더욱 위협 받을 것 같다.

2. 덤피ング

우회 덤피ング에 관한 규정 강화와 상습 덤피ング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조치의 대가로 특히, 코스트 계산과 피해판정에서 덤피ング코드를 완화 시킬려는 미국의 대외통상 협정 시도는 벽에 부딪친 느낌이다.

업계와 이들을 지원하는 의회 인사의 강력한 연합은 덤피ング 코드의 어떠한 완화조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10월 18일 칼라힐즈 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로이드 벤슨 상원 재무 위원회 의장은

“강화된 1988 무역법을 약화시키는 협상을 원치 않는다.

미국의 반덤핑법은 … 미국 무역정책상 중요 요소이며… 미국의 목적은 미국의 통상법을 약화시키지 않고 반덤핑법의 국제적인 규범을 강화시키는데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힐즈 대표는 미국의 불공정 무역법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에 확약하였다.

제네바 소식통들은 덤피ング에 관하여 수락할 수 있는 타협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전망을 하였다.

USTR 협상자들은 덤피ング 절차상의 개선에 관한 마지막 순간의 양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안에 반대한 최근의 GATT 패널 결정은 미국측에 융통성을 강요할 것이며 만일 미국의 1988 통상법내의 반우회 덤피ング 절차가 GATT에서 인정받는다면 미국은 다소의 양보를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양보가 이루어진다면, 힐즈 대표는 미국 통상법을 약화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덤피ング과 보조금 문제가 너무 복잡하여 브레下面小编에서 협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12월 각교 회담전 제네바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덤피ング과 보조금 부문은 협상에서 제외될 곳으로 보인다.

미국은 효과적으로 미국법을 “약화” 시키는 제안에 동의보다는 오히려 기존법을 존속시키려 할 것이다.

3. 보조금

미국은 보조금 코드의 의미 깊은 개정을 시원하게 하는 희망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모든 수출 및 국내 보조금을 금지(red light)하는 국제적인 규약의 필요성을 강력히 회망해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협용 보조금(green light) 리스트 추진에 촛점을 두어 왔

다.

미국은 보조금 중 가장 주요한 사안인 철강 분야를 다루기 위해 별도의 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협상자들은 다자간 합의 하에 보조금/덤핑 케이스를 허용치 않는 외국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서 우루파이 라운드의 협정 시행에 대한 철강업계의 반대를 자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4. 원산지 규정

한국 제조업체에 중요한 또 다른 분야는 원산지 규정을 통일시키는 틀을 제공할 것이다. 핵심 사안은 특혜 무역(preference trade) 관계가 통일 규정(harmonized rules)에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에 있으며 이 문제는 특히 1992년 EC 단일시장과 멕시코-미국-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 중요한 사안이다.

EC는 특혜 협정(preferential agreements)은 GATT 규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협정에서 각국이 “규정”과 “정의”를 제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GATT 실무 협상 그룹은 원산지 규정의 통일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것이며 또한 미국내에서 완전히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판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 실질적으로 제품의 최종 변형 장소
- 원산지에 일치하지 않는 최소 작업의 정의
- 원산지와 기타 방법(means)을 표기하기에 불충분한 HTS 번호의 변경에 관한 정의.

원산지 규정의 일치 목적은 비차별성, 명료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이룩하는데에 있다.

5. 서비스

미 행정부는 서비스 분야에서 모든 산업 부문과 구체적인 자유화 공적의 추진을 위하여 완전한 MFN 및 내국민 대우 협상의 최초의 주도적 입장에서 후퇴하였다.

완전한 자유화에서부터 해운, 항공, 금융 및 통신 서비스의 보호를 위한 특별 부록 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협상자들은 향후 자유화 조치에 포함될 서비스 분야의 특별 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 규정안이 마련된다면, 개도국들은 결국 실질적으로 약화된 체제에서 유치한 서비스 산업의 보호를 위해 특별 규정을 고집할 것이다.

협상에서 타결될 전망이 밝은 분야는 분쟁 해결 절차와 지적 소유권보호이나 성공을 확신할 단계는 아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 두 분야에서 미국이 “GATT 규정과 절차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조치의 시행 위협을 삼가한다”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기하고 있다.

301조가 미국내에서 많은 기대를 지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 의회가 이러한 조건부 교환(trade off)을 수용할지는 명확치 않은 상태다.

미국이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은 개도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분야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분야는 LDC(최빈국)의 국제수지와 국내 보조금에 대한 규제강화, 무역관련 투자조치 등을 포함한다.

